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공고 안내

1. 공급개요

□ 주택명 : **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**

□ 공급 위치 :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212-3번지 일원

□ 공급 일정 : [입주자 모집공고] **'26.10.2.(금)** → [청약홈 청약신청] **'26.10.12.(월)**

*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·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배정 세대수 : 6세대(예비 30세대)**

구분	주택유형				계
	74	84A	84B	84C	
추천(예비)	1(5)	3(15)	1(5)	1(5)	6(30)

2. 대상요건

(1)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**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**

* 제외업종 :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

(2)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**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(또는 동일 중소기업 근무 3년) 이상인 자**

(3)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**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(대표자 및 법인 임원* 제외)**

* 다만, ①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8조)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(급여수령) 시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

(4)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**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**

* **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**여야 하며,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

(5) **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거주자***이며, 지역·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(종합저축, 청약저축)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(시행사 측 안내문 참고)

* (예외) 건설예정지역이 '평택시'인 주택은 신청자 거주지 제한 없음

3. 신청 안내

□ **신청기간 : 2026. 9. 7.(월) ~ 2026. 9. 10.(목) 18:00**

□ **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***

*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) → 알림마당 →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→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

※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

□ **신청서류** : [참고] 제출서류 목록(4p) 참조(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)

□ **신청취하 :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내*** 신청사이트**에서 **신청자가 직접 취하** (취하 번복 불가)

* **주말·공휴일이 포함**된 경우, **익일까지 취하** 가능(예시 :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인 경우, 다음주 월요일(24시전)까지 신청취하 가능

**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→ (상단)신청관리 →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에서 신청취하

□ **추천자 선정** :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

□ **추천자 발표 : '26. 10. 7.(수) 예정**

* 추천자와 예비자에 한하여 문자안내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추천자 커트라인 공개 예정

※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, **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**

4. 유의사항

□ 본 공고는 「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으로 추천함

□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, 가점 항목 미선택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(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한 엄수)

※ 가점항목, 내용, 기준 및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 요망

□ 청약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하며,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 사유에 따른 미청약 시 감점사유에 해당함

※ 무주택, 청약조건(청약예금 등), 분양가, 분양일정 등 관련사항은 시행사에 문의

□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,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 불가능 시, 대상요건 및 재직기간 점수 불인정

※ 이전직장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을 참고하여 기재(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)

□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

□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'청약자격 확인 - 주택소유 확인'을 통해 모든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신청

*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제반 사항 문의 : 국토부 민원 콜센터(1599-0001)

□ 특별공급 추천시 시행사로 추천서를 직접 발송하므로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

□ 주민등록법령 위반,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취소

□ 특별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에'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'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(미신청시 추천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불가)

□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신청기간, 배정세대 등 공급 내용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

□ 기타 세부사항은 「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71호(2023.1.1.시행)」, 운영매뉴얼,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참고

※ 문의처

기관추천	031-201-6836	청약, 무주택 요건	(청약홈)1644-7445, (국토부)1599-0001
시행사(분양사)	1866-0333	시스템오류	1661-7616

참고 제출서류 목록

◈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

※ 발급일자 예외 : 법인등기부등본(3개월 이내), 사업자등록증(제한없음), 공장등록증명서(6개월 이내)

□ 기본 제출서류

1. 주민등록등본 1부(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)

 *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(등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

2. 사업자등록증 1부

3. 법인등기부등본 1부(전부증명서, 말소사항 포함)

※ 1, 2, 3번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로 대체 가능(신청자 서명•날인 및 재직기업 직인 필수)

4. 주택우선공급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

 * 시스템 신청서 작성 시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

5.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서 1부

 *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에서 발급

6.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

 *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, 국민건강보험 (www.nhis.or.kr) 에서 발급

 ☞ 이전 직장경력 내역 포함하여 발급(내역에 없을 시 근무경력 불인정)

7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□ 가점 서류

1.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: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, 업종 : 제조업)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(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)

2. 뿌리산업근로자 : 뿌리기업확인서, 뿌리기술명가선정증,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증, 공장등록증명서 중 택 1

 *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: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內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→ 뿌리산업의 범위(https://www.root-tech.org/certification/guide02.php)

 *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참고

3. 우수숙련기술자 : 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, 우수숙련기술자증서 中 택1

4.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: 연구개발인력현황** 및 기업부설 연구소인증서(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) 각 1부

 * 인증서 및 연구개발인력현황 발급사이트 : www.rnd.or.kr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
 **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

5. 성과공제* 5년 만기자 :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, 납부확인서

 * **중소벤처기업부**에서 시행하는 5년만기 내일채움공제만 해당(고용노동부 해당없음)

6.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: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

 * Q-Net 발급 가능하며,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

7. 수상경력 :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(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) ***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부터 수상 인정**

8. 미성년 자녀(만 19세 미만) :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임신확인증 1부(태아의 경우)

9. 주택건설지역 재직 : 현 근무지 주소 기재된 재직증명서(주택건설지역(시·군)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 시)

10. 무주택기간 :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혼인관계증명서 1부(만 30세 이전 혼인신고 시 필수)

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, 온라인 신청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정보와 무주택기간 정확히 입력

 - 전산상 주택 매도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매도일 확인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등 제출

※ **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 방법**
- **건물등기부등본** : 무인발급기, 등기소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
- **건축물관리대장** : 구청,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24 홈페이지
- **혼인관계증명서** : '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에서 발급가능

※ 무주택기간 산정기준

과거 주택소유여부	만30세 이전 혼인여부	무주택기간
무주택자 (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)	**신청자 본인**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	만 30세가 된 날~입주자모집공고일
	신청자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혼인함	혼인신고일~입주자모집공고일
과거 주택소유 (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다 매도하였음)	**신청자 본인**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	①만30세가 된 날,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(최근) ~입주자모집공고일
	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함	①혼인신고일,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(최근) ~입주자모집공고일

□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」)

○ **(제1호)**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,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,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

○ **(제2호)** 국토부 '씨리얼'*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, 신청자의 초본, 기본증명서

* 씨리얼 홈페이지 : seereal.lh.or.kr

○ **(제3호)**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'주택판매' 또는 '분양'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, 분양을 완료(소유권 이전)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

○ **(제4호)**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

○ **(제5호)** 건축물관리대장(면적), 분양계약서(전용면적)

○ **(제7호)** 폐가 사진, 공과금 증빙(물, 수도,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),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

○ **(제8호)**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

*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

○ **(제10호)**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